

제 497 호

1975. 4. 23

발행인 : 서울특별시장 구 차 춘

편집 : 문화홍보실장 조 용 하

전화 75-7834

인쇄 : 서울특별시종합발간실

전화 75-6090

시보

차례

◎ 조례

제 944 호	서울특별시미관지구건축조례개정조례	3
제 945 호	서울특별시지하철전시장시설사용료징수조례	9
제 946 호	서울특별시공원조례증 개정조례	14

◎ 규칙

제 1462 호	서울특별시인사규칙증 개정규칙	15
----------	-----------------	----

◎ 훈령

제 405 호	서울특별시도시가스사업소위임전결규정증 개정규정	17
---------	-----------------------------	----

◎ 고시

제 50 호	도시계획시설(광장및도로)지적일부변경	17
제 51 호	도시계획시설(시장) 결정 및 지적승인	18
제 52 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일부변경 및 지적승인	19
제 53 호	도시계획시설(공원)지적승인	20
제 54 호	도시계획시설(공원)지적일부변경	21
제 55 호	도시계획시설(녹지)지적승인	21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제 56 호	도시계획공원 및 주변도시계획 도로일부변경 및 지적승인	22
제 57 호	도시계획 용도지역지적승인	23
◎ 공 고		
제 84 호	서울특별시 중소기업협동조합대표자 및 소재지 변경 공고	24
제 86 호	서울특별시 소방본부 소방관보통정제위원회 위원장 공인신조공고	25
제 87 호	분뇨처리 업체가 및 액상폐기 물질정화조설계 . 시공 청소업자의 등록증지	25
제 88 호	도시계획시설 (도로) 실시계획공람공고	25
제 89 호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수출증세 산지경업체지정 및 자금지원요령증 개정	27
제 92 호	도시계획시설 (도로) 실시계획공람공고	28
제 93 호	도시계획시설 (도로) 실시계획공람공고	34
◎ 사 명		37

조례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미관지구 건축조례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구자준 [인]

1975년 4월 23일

◎ 서울특별시 조례 제 944 호

서울특별시 미관지구

건축조례 개정조례

서울특별시 미관지구 건축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제 33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 1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내에 있어서의 건축물의 건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등 지구내의 미관을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건축허가) 시장은 미관지구내의 건축물의 건축 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 3 조(건축제한의 구분) 미관지구내에서의 건축제한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하여 행한다.

1. 제 1 종 미관지구 : 상업지역으로서 토지의 이용도가 극히 큰 구역중 도로연변의 떠 모양인 미관지구

2. 제 2 종 미관지구 : 토지의 이용도가 비교적 큰 구역중 도로연변의 떠모양인 미관지구

3. 제 3 종 미관지구 : 관광에 직접 필요한 도로의 연변과 시가지도 부터 관광지 또는 출입구한에 이르는 도로연변에 있는 떠모양인 미관지구

4. 제 4 종 미관지구 : 누거 및 생활환경의 미관유지를 위하여 지정된 미관지구

5. 제 5 종 미관지구 : 상업지역으로서 그 환경의 미관유지를 위하여 지정된 미관지구

제 4 조(용도제한) (1) 제 1 종 미관지구내에서는 다음각호에 게기하는 건축물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을 이를 건축할 수 있다.

1. 농수산물 도매시장 시장

2. 고급상

3. 천연병원, 정신병원, 마약진료소, 장의사, 가축병원

4. 자동차매매소, 자동차정비소,

차동차부품상, 세차장	기한 건축물은 이를 전축할 수 없다.
5. 연탄공장, 저탄장	④ 제 4 종 미관지구내에서는 다음 각 호에 계기하는 건축물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이를 전축할 수 없다.
6. 재재소, 목재판매소, 목공소 건재상	1. 영 제 142 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 3에 계기한 건축물
7. 양곡가공업소 다만, 제과점은 제외한다.	2. 제 1 항 제 1 호 내지 제 9 호 제 11 호 내지 제 14 호 및 제 16 호에 계기한 건축물
8. 창고	⑤ 제 6 종 미관지구내에서는 제 1 항 제 1 호 내지 제 14 호에 계기한 건축 물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이를 전축할 수 없다.
9. 식품가공 공장	제 5 조(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미관지구 내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다음 각 호에 계기하는 면적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주위의 미관에 조화될 수 있는 설계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10. 정육점	1. 제 1 종 미관지구 : 330 평방미터
11. 철물점, 공구판매점	2. 제 2 종 미관지구 : 210 평방미터
12. 세탁소 다만, 지점세탁하지 아니 하는 것을 제외한다.	3. 제 3 종 미관지구 : 210 평방미터
13. 옥외작업장을 갖는 건축물	4. 제 4 종 미관지구 : 210 평방미터
14. 공장	5. 제 5 종 미관지구 : 210 평방미터
15. 단독주택 다만 점포를 겸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제 6 조(대지의 최소폭) 미관지구내의
16. 주유소 및 기타 위험물 저장소	
17. 공동주택	
② 제 2 종 미관지구에서는 제 1 항 제 1 호 내지 제 15 호에 계기한 건축물 및 이와 유사한 건축물을 은 이를 전축할 수 없다. 다만 전용공업지역, 공업지역, 준 공업지역에서 공장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 3 종 미관지구내에서는 제 1 항 제 1 호 내지 제 13 호에 계	

최소폭(건축물이 있는 부분이 최소 폭을 초과한다)은 다음 각호에 계기하는 폭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시장이 수위의 미판에 조화될 수 있는 설계를 제정한 경우에는 그려하지 아니한다.

1. 제 1 층 미판지구 : 15 미터
2. 제 2 층 미판지구 : 12 미터
3. 제 3 층 미판지구 : 12 미터
4. 제 4 층 미판지구 : 10 미터

5. 제 5 층 미판지구 : 10 미터
 제 7 조(대지안의 공지) 미판지구 내의 건축물(담장 및 이와 유통을 위한 것을 제외한다)은 건축선(주택의 경우에 한한다) 및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표에 계기하는 거리 이상을 뛰어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수위를 조화될 수 있는 설계를 제정한 경우에는 그려하지 아니한다.

구 분	건축선으로부터거리	후면경계선으로부터거리
제 1 층 미판지구		1.0
제 2 층 미판지구	-	1.0
제 3 층 미판지구	3.0	1.5
제 4 층 미판지구	3.0	1.5
제 5 층 미판지구	2.0	1.5

제 8조(건축물의 높이등) ① 미판지구내에서 건축물의 높이는 다음 각호에 계기하는 높이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제 4 층 미판지구에서는 그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1. 제 1 층 미판지구 : 5 층
2. 제 2 층 미판지구 : 3 층
3. 제 3 층 미판지구 : 1 층
4. 제 4 층 미판지구 : 12 미터

5. 제 5 층 미판지구 : 2 층
 ② 시장은 교회, 영화관, 극장, 화물소, 우체국, 책 유판, 집회장, 관람장, 주유소, 기념관 및 기타 이와 유통을 위한 건축물로서 용도상 불가피한 건축물 또는 타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전항의 높이 제한의 적용이 실효 곤란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전

축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위 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전항의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③ 제 1 종 내지 제 3 종 미관지구로서 도시미관 및 균형있는 도시형성을 위하여 시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여 건축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한 구역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정할 수 있다.
- ④ 시장은 그 자형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로서 인접 건축물의 높이와의 조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높이를 제한할 수 있다.
- ⑤ 제 1 종 내지 제 3 종 미관지구로서 당해 도로의 언변이 도로

보다 심히 낮아 건축물 부분이 도로면 이하에 있음으로서 그 도로에서의 천망이 유타하다고 인정하여 시장이 지정, 고시한 구역내의 건축물의 높이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도로면의 높이를 초과할 수 없다.

- 제 9 조(건축물의 규모) ① 미관지구 내의 주택은 그 건축면적이 60평방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 ② 미관지구내의 주택이외의 건축물은 다음표에 제기하는 규모이상 이어야 한다. 다만, 인접하여 기존건축물이 있거나 도로등이 있어 부득이한 경우로서 시장이 주위의 미관에 조화될 수 있는 설계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려하지 아니하다.

(단위 : m)

구 분	건축물의 옆면길이	건축물의 옆면길이
제 1 종 미관지구	18	9
제 2 종 미관지구	12	6
제 3 종 미관지구	15	9
제 4 종 미관지구	10	6
제 5 종 미관지구	12	6

<p>③ 제 1 층 내지 제 3 층 및 제 5 층 미관지구내의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층의 수에 따라 다음 규모 이상이어야</p>	<p>한다. 다만, 단독주택의 경우는 그러하 지 아니 한다.</p>
층 의 수	건축면적 (평방미터)
3 층	150
4 ~ 5 층	260
6 ~ 10 층	330
11 ~ 15 층	500
15 층 이상	300
<p>제 10 조 (부속건축물의 규모) 미관지구 내의 건축물에 부속된 건축물의 건축 면적은 그 주원 건축물의 외벽과 이에 배향하는 대지 경계선과의 사이에 있는 대지 부분의 면적의 8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p> <p>제 11 조 (건축물의 모양) ① 시장은 미관지구의 특정구역에서 미관의 확보 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구역을 지정고시하고 규 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양 식, 구조, 형태를 제한할 수 있다.</p> <p>② 미관지구내의 건축물의 평면은 직 사각형, 철사각형, 원형 또는 타원형 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p>	<p>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구의 미관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에는 건축물 모서리 부 분의 내각은 각각 60도 이상 120도 이하이어야 한다.</p> <p>③ 미관지구내의 건축물의 유품층 에서는 계단실, 기계실, 물탱크 및 이와 유사한 용도 이외의 것은 축소할 수 없다.</p> <p>④ 미관지구내에서 건축물의 유품 의 의장은 건축물 기타 부분의 의장에서 사용한 재료와 유사한 재료로 하여 건축물 전체와 조</p>

화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구의 미관유지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2 조 (건축물의 투수 시설 등)

① 미관지구내에서는 세탁물 건조대, 장독대, 철조망 기타 이와 유사한 공작물을 외부에 노출되어서는 아니된다.

② 미관지구내에서는 굴뚝, 환기설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은 건축물의 전면 또는 축면부분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미관지구내에서는 건축물 외부에 노출된 비상체단 및 이와 유사한 건축물의 부수시설을 도로, 광장등에 면하게 설치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시장은 미관지구내에서 그 지구의 미관유지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면시설의 설치, 교체 또는 철거를 명할

수 있다.

제 13 조 (기준건축물 및 대지) ① 미관지구의 지정 이전의 기준 건축물로서 미관지구의 지정에 의하여 그 건축제한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것 (종전의 제한에 관한 규정에 위배된 기준건축물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영제 142조 제 10 항의 규정을 준용하되 이 경우에 동항의 규정중 '2분의 1'을 '5분의 1'로 한다.

② 미관지구의 지정 이전에 이미 분할된 대지로서 미관지구의 지정에 의하여 제 5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것에 대하여는 그 대지면적의 최도한도는 영제 142조 제 11 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시장은 미관지구의 지정이전의 기준건축물로서 미관지구의 지정에 의하여 그 건축제한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됨으로서 도시 미관상 유태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동도변경, 수선, 도장,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 14 조 (적용에서의 제외) 제 1 종

및 제 2 중 미 판지구내에서 건축
건으로부터 12미터 이상 후퇴하
여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 8조 제 1항 및 제 9조의 규정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15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의 계획에 관한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기존 건축물 또는 대지로서 이 조례에
의한 건축제한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것에 대하여는 제 13조의 규정을 준용
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지하철 전시장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구자준 일

1975년 4월 23일

◎서울특별시 조례제 945 호

서울특별시 지하철 전시
장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제 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
시·지하철 전시장(이하 "전시장"
이라한다) 사용로 징수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 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
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시장"이라함은 지하철역
구내에 전시를 목적으로 협성
하는 장소를 말한다.

2. "시설"이라함은 지하철역
대합실, 통로, 승강장과 그에
부수된 설비또는 비품을 말한
다.

3. "시설의 사용"이라함은 전호
의 시설을 사용또는 이용하여
계시동 기타 행위를 함을 말
한다.

4. "사용자"라함은 개인또는
단체가 전시를 목적으로 시설
을 사용하는자를, 사용로라함
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 3조(사용의 허가) ①전시장의
사용허가는 서울특별시 지하철본
부장(이하 "본부장"이라한다)이
한다.

<p>② 전시장을 사용 하교자 하는 자는 사용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15일 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전시장 시설사용 신청서를 본부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p>	<p>7일전에 사용료를 본부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p>
<p>③ 전항에 의한 허가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전시장 시설사용 허가서를 교부함으로서 행한다.</p>	<p>②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 기일이 늦어질때 사용료의 납기 이후에 허가를 받은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허가받은 날에 납부하여야 한다.</p>
<p>④ 사용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하고자 할때에는 본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p>	<p>③ 허가 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할때의 사용료는 추가 사용일 이전에 납부하여야 한다.</p>
<p>제4조(사용의 불허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한다.</p>	<p>제7조(사용료의 감면) 본부장은 공익상 다음과 같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p>
<p>1.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상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전시 3. 시설또는 설비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4. 기타 본부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p>	<p>1. 공공단체가 직접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전시 ----- 30% 할인 2. 학교에서 주최하는 학생들의 작품전시 ----- 30% 할인 3.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항의 할일율에 준하여 감면할 수 있다.</p>
<p>제5조(사용료) 전시장의 1일 사용료는 사용면적 매 1평에 대하여 300원으로 한다.</p>	<p>제8조(사용료의 반환)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p>
<p>제6조(사용료의 납기) ① 전시장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자는 사용일</p>	<p>1. 재해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p>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 하게 될 때 2. 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정지 될 때	제 13 조(권리) ① 사용자가 특별한 설비를 하교자 할 때에는 미리 본 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본부장은 관리상 필요하다고 일 정할 때에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시킬 수 있다. ③ 전시에 필요한 설전 간판은 역 출입구에 2 개소, 대합실내에 2 개소 이내에 한하여 전립할 수 있다. ④ 전 2 항에 의하여 설비를 할 때 에는 시설물의 원상을 해손하여서 는 안되어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에 사용자 부담으로 이를 철거하 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대질책하고 그 비용을 사용 자로부터 징수한다.
제 10 조(면책) 본부장은 전조 각호 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사용 의 허가를 취소 당하였거나 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예상책임을	제 14 조(양도 및 전매의 금지)
지지 아니한다.	이 조항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 은 자는 본부장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매할 수 없다.
제 11 조(사용자의 주의업무) 사용자는 사용 기간 중 전시장 시설 또는 설비	제 15 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가지고 관리하여야 한다.	부 록 이 조례는 광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12 조(손해배상) 사용자가 관리의무 를 태만히 하여 전시장 시설 또는 설비를 해손 하였을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	

40-12 제 497 호

시 보

1975.4.23

별지 제 1 호 서식

서 울 특 별 시 지 하 철 전 시 장 시 설 사 용 신 청 서

전 시 장 소 명	면 책	사 용 기 간	사 용 용 치	비 고

지 하 철 전 시 장 시 설 사 용료 징수 조례 제 3 조의 규정
에 의 하여 사용 허가를 신청 하오니 허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7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직업 또는 단체명

성명 또는 대표자명

전화 :

서 울 특 별 시 지 하 철 본 부 장 귀하

구비 서류 : 1. 전시 계획서

2. 전시 품 내역

별지 제2호 서식

서 울 특 별 시 지 하 철 전 시 장 시 설 사 용 허 가 서

1. 주 소

성 명 (대 표 자)

단 체 명

2. 사용 허가 내 역

전 시 장 소·명	사용 기 간	사 용 면적	사 용 로	남 부 기 일	비 고

3. 조 건

위와같이 허가함

197 년 월 일

서 울 특 별 시 지 하 철 본 부 장

40-14 제 497 호

시

보 1975.4.23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공원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구자춘 인

1975년 4월 23일

⑤ 서울특별시 조례제 946호

서울특별시 공원조례중
개정조례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4」

비공원관리청의 사용료(어린이대공원)

(단위 : 원)

구 분	대 인	소 인	비 고
놀이동산	50원 이내	30원 이내	0. 1회에 한하여
하늘차	120 "	60 "	0. 소인은 4세
청용열차	120 "	60 "	- 14세 이내
마니해일	120 "	60 "	
번개차	120 "	60 "	
두꺼비차	120 "	60 "	
아기차	-	60 "	
교마기차	80 "	30 "	
팽이놀이	80 "	40 "	
비즈카보	80 "	40 "	
달로켓트	60 "	40 "	
오솔길	60 "	30 "	
회전집	무료	무료	
풍자놀이	"	"	
회전그네	"	"	

규 칙

서울특별시 인사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구자춘 [인]
1975년 4월 23일

◎ 서울특별시 규칙제 1462호

서울특별시인사규칙중
개정 규칙

서울특별시 인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호 제5호 //다//목중 "지하철
건설본부"를 "지하철본부"로
"한강"을 "주택"으로 한다.

제6조중 표제 "기관별 인사위원회"
로 하고, 동조제1항중 "구인사
위원회"를 다음에 "지하철본부에
지하철인사위원회"로 삽입하여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지하철 인사위원회는 다음과 같
이 구성한다.

1. 위원장: 운영담당관(사고시는
기술담당관)

2. 부위원장: 관리과장

3. 위원: 경리과장, 운수과장,
공무과장, 전차과장, 전기과장,

4. 간부: 서무제장

5. 서기: 서무제 소속공무원

제17조 제2항 제1호 및 제4호중
"4급이하"를 각각 "3급이하"로
한다.

제18조 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 제1호 가록.
제2호 가록 및 각목중 "4급이
하"를 각각 "3급이하"로, 동조
제2항 제2호 가록중 "5급"을
"4급이하"로 하고, 동호 마목중
"기능직" 앞에 "4급이하" 공무원
과"를 삽입한다. 다만, 지하철
본부장에게는 기능직 공무원의 승
진임용권을 내부 위임한다.

제52조 단서중 "구출장소" 다음에
"와 2급 이상을 장으로 하는 사
업소"를 삽입한다.

제69조의 2 및 제69조의 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9조의 2 (휴직) ①교용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하기 위하여 징집또는 소집된 때

2.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때(즉결
심판 또는 약식 명령이 청구

될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전항의 휴지기간중의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 69 조의 3 (병역복무 휴직자의 결원 보증) ① 고용원이 제 69 조의 2 제 1

호의 사유로 6월이상 휴지한 경우에는 휴지일로부터 당해 휴직자에 대한 정원이 별도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원을 보충함에 있어서는 제 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전행한다.

③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은 휴직자가 복직된 후 고용원에 최초로 결원이 발생한 때에 소멸된 것으로 보며 제 63 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원의 기관간전보의 에 의하여 현원을 조정한다.

제 109 조증) 및 구 공적심사위원회를 "구 공적심사위원회와 지하철 공적심사위원회"로 하고, 제 3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지하철본부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장 : 운영담당관(사고시는 기

술 담당관)

위 원 : 위원장이 임명하는 과장 6명이상

제 112 조증 "동장 및 시민이 추천한다"를 "동장 및 시민이 추천하고 지하철 본부장 표창 대상자는 소속 과장, 현업기관장 및 시민이 추천한다"로 한다.

제 124 조 제 1 항증 "작구" 다음에 "및 출장소와 지하철본부"를 삽입하고 동조 제 2 항증 "사무과에 둔다"를 "사무과에 두고 지하철 본부 직원 신상상담소는 관리과에 둔다"로 하여 동조 제 6 항을 제 7 항으로 하여 제 6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지하철본부 직원 신상상담소의 상담관은 관리과장이 되고 간사는 서무체장이 된다.

제 125 조증 "관장한다"를 지하철 본부 직원 신상상담소는 "본부 및 현업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신상상담업무를 관장한다"로 한다.

제 127 조 제 2 항 제 1 호 및 제 128 조 제 2 항증 "또는 출장소"를 각각 "출장소 또는 지하철본부"로 한다.

제 129 조 및 제 131 조증 "및 출장소"를 각각 "출장소 및 지하철 본부"로 한다.

별표 16 "고용원의 직명 및 봉급
한체표 제1종 월급한체란증 "20
호"을 "25호로 제2종 내지
제4종 월급한체란증 "17호"를
각각 "22호"로 제5종 월급한체
란증 "7호"를 "15호"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훈령

서울특별시 도시가스사업소 위임전결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975년 4월 23일

서울특별시장 구자춘

⑤ 서울특별시 훈령 제 405 호

서울특별시 도시가스사업소
위임전결규정 중 개정규정

서울특별시 도시가스사업소 위임전결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7조 중 제 26호 내지 제 3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6. 봉급 기타 조례에 의한 의무
적 경비의 지출.

27. 물품의 청구와 수리.
28. 시의전화 사용허가.
29. 소속금품의 출납명령.
30. 시공감독 및 준공검사원 지정.
31. 준공 및 하자보증금의 출납결의.
32. 세입세출의 현금출납의 결의.
33. 5만원 미만의 물품구매,
제조 및 서비스업계약.
34. 10만원 미만의 공사계약.
35. 10만원 미만의 확정 계무
지출.

부 칙

이 규정은 1975년 5월 1일
부터 시행한다.

고 시

⑥ 서울특별시 고시 제 50 호

도시계획시설(광장 및
도로)지적일부변경

1. 당시 관내 도시계획시설(광장 및
도로)을 다음과 같이 지적일부를
변경하여 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3조와 건설부고시 제 123 호(73. 4. 4.)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40-18 제 497 호

시

1975.4.23

국 도시계획과의 관할구청 시민봉
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
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5년 4월 19일

서울특별시장

가. 광장 변경조서

구분	광장번호	명 칭	시설구분	면적	비 고
기점	4	안국동광장	교통광장	6,327 m ²	50m ² 면적축소
변경	"	"	"	6,277	

나. 노선 변경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연장	기점	종점	비 고
기점	대로	3	26	25-10	4,000	한강로3가	평당동	시공선에
변경	"	"	"	"	"	"	"	맞추어변경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청 및 관할구청에 보관.

⑥ 서울특별시고시 제 51 호

도시계획시설(시장)

결정 및 지적승인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중앙 도배시장)을 다음과 같이 결정 및 지적승인 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2 조 및 제 13 조와 건설부고시 제 6 호 (74. 1. 5)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

-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부 도시계획과와 영등포장소 시민
봉사실에 각각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5. 4. 21

서울특별시장

가. 시설조사

시설명	위치	면적	비고
영동중앙 도예시장	성동구·서초동산 119,58 679 번지 일대	32,680m ²	영동 구획정리 사업지구

별첨 : 도면표시와 같음(도면생략)

도면은 서울특별시청과 영동출장소에 보관.

◎ 서울특별시 고시 제 52 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일부변경 및 지적승인

1. 당시 관내 도시계획시설(도로)

을 다음과같이 일부변경 및 지적
승인 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2조
및 제 13조의 규정과 건설 부고
시 제 123호(73. 4. 4)의 권
한위임 사항에 따라 이를 고시
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국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시민봉

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
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75. 4. 21.

서 울 특 별 시 장

별첨 : 도면표시와 같음(도면생략)

관계도면은 서울특별시청 및 관할
구청에 보관함.

1. 도시계획 소모 일부변경조서(별첨)

노 선 조 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연장	기점	종점	비고
기정	소로	2		8	190	금호동 125-1	금호동 404	
변경	"	"		"	190	"	"	위치일부 변경
기정	"	3		8	120	성수1가 656-516	성수1가 656-371	"
변경	"	"		6	115	"	"	"
기정	"	2		8	200	미아동 42-96	미아동 39-7	
변경	"	2		8	200	"	"	"
기정	"	3		4	110	능동 418-7	능동 318-7	
폐지	"	"		"	"	"	"	폐지

⑤ 서울특별시 고시 제 53 호

도시계획시설(공원)
지적승인

1. 전설부고시 제 49 호(73.4.3)로
시설 결정된 도시계획공원(동묘공
원) 지적승인을 다음과 같이 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3조 및 전설부 고시
제 123 호(73.4.4)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

2. 관세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국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
실에 배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가. 도시계획공원 신설 결정 및 지적승인

공원명	위치	면적	비고
동묘공원	동래문구 송인동	9,316m ²	신설

1975. 4.

서울특별시장

별첨 : 도면표시와 같음(도면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보관.)

◎ 서울특별시 고시 제 54 호

도시계획시설(공원)

지적 일부변경

1. 건설부고시 제 49 호(75.4.3)로 일부
변경된 도시계획공원(청량공원)의
지적을 다음과 같이 일부 변경
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3 조 및

건설부고시 제 123 호(73.4.4)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시민
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가. 도시계획공원 일부변경 및 지적승인

공원명	위치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청량리	동대문구 월곡, 석관동	1,247,383	감 30,264	1,217,119
공원	일부지역			

1975. 4.

서울특별시장

별첨 : 도면표시와 같음. (도면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보관.)

◎ 서울특별시 고시 제 55 호

도시계획시설(녹지)

지적승인

1. 건설부고시 제 49 호(75.4.3)로
시설결정된 도시계획시설(녹지)
의 지적승인을 다음과 같이 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3 조 및 건설부고시
제 123 호(73.4.4)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국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시민봉사
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40-22 제 497 호

시 보

1975.4.23

가. 도시계획시설(녹지) 지적승인 조서

시설명	위치	면적	비고
광희녹지	중구 광희동 1가 202 번지	1,241m ²	

1975. 4. 23

서울특별시장

별첨 : 도면표시와 같음. 도면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시민용사실에 보관.

⑤ 서울특별시 고시 제 56 호

도시계획공원 및 주변도시계획
도로 일부변경 및 지적승인

1. 건설부고시 제 49 호(75.4.3.)
로 일부변경된 도시계획공원(농동공원)의 지적을 일부변경 승인하고 어린이공원 주변 도시계획도로를 일부변경 및 지적승인

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2 조 및 제 13 조와 건설부고시 제 123 호(73.4.4.)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시민용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가. 도시계획공원 일부변경 및 지적승인

공원명	위치	면적(m ²)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농동 아동공원	성동구 농동	382,383	증 109,714	492,102	

나. 광활주변 도시계획도로 변경조서

구분	동급	유형	번호	폭원	연장	기점	종점	비고
기점	소로	3		6	390	농동 437	농동 232-2	
변경	"	"		"	440	농동 421-1	"	
기점	소로	3		6	810	농동 80-49	농동 76-3	
변경변	"	"		"	550	농동 80-28	농동 76-5	
기점	소로	3		6	160	농동 62- 6	농동 39-3	
변경	"	"		"	200	"	" 36-8	
기점	소로	3		6	190	어린이공원동측	" 58-3	
폐지	"	"		"	190	"	" "	
기점	소로	3		6	80	농동 76- 2	" 76-2	
폐지	"	"		"	"	"	" "	

1975. 4. 23.

서 울 특 별 시 장

별첨 : 도면표시와 같음. (도면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보관.)

⑤ 서울특별시 고시 제 57 호

도 시 계획 용도지역
지 적 승 인

1. 건설부고시 제 49 호 (75.4.3)
로 지정고시된 상업지역을 다음
과 같이 도시계획 용도지역 지적승

인 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3 조 및
건설부고시 제 123 호 (73.4.4)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국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시민봉
사실에 각각 배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40-24 계 497 호 시 보 1975. 4. 23

첨부 1. 도시계획 용도지역 지적승 인 조서(도면표시와같음) 2. 지적고지도면(도면생략)	1975. 4. 서울특별시장
---	--------------------

가. 도시계획 용도지역지적승인 조서

용도지역구분	위 치	면적	비고
상업지역	성동구 서초동산 120-5, 120-6	15,698m ²	

별첨 : (도면생략) 도면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의 관할
구청 시민봉사실에 보관함.

공 고

◎ 서울특별시 공고 제 84 호

서울특별시 중소기업협동조합
대표자 및 소재지 변경공고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대표자 및 소재지 변경을 서울특별시
단체감독 규칙제 5조의 규정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975. 4.

서울특별시장

가. 변경사항

조합명	대 표 자		사무소 소재지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서울특별시 지불 공업협동조합	강영무	강영무	중구 주교동 135-5	중구 산림동 84
서울특별시 연식품 공업협동조합	김태운	김정락	서대문구 충정로 1가 83	중구 낭내문로 4 가 17-11

제 497 호

시

보 1975. 4. 23 40-25

◎ 서울특별시 공고제 86 호

서울특별시 소방본부 소방관보통
정책위원회 위원장 공인 선조 공고

다음과 같이 당시 산하 소방본부
소방관 보통 정책 위원회 위원장
공인을 선조 사용토록 하였기 이를
공고함.

1975. 4. 21.

서울특별시 장

1. 공인명

서울특별시 소방본부 소방관 보통
정책위원회 위원장 직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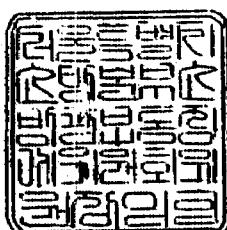
서울특별시 소방본부 소방관 보통
정책위원회 위원장 제인

2. 사용일자 1975. 4. 21 09:00

3. 공인의 일정

위원장인

위원장 제인



◎ 서울특별시 공고제 87 호

분뇨처리업자 및 배상폐기물 정화
조설계 시공 청소업자의 봉투 중지

당시에서는 73.3.8자 오물정소법
의 개정공포시행에 따라 분뇨처리업
자 및 배상폐기물 정화조 설계.
시공, 청소업자의 등록을 실시하였던
바 업자의 난립으로 인한 과다 경쟁
으로 일부업자가 정화조의 불설시
공 또는 불설청소로 선향한 시민에
게 피해를 끼치는 사례가 있어 업
자의 정화와 시민의 보건위생을 확
하여 잠정적으로 75. 4. 23부터
신규허가 및 등록을 중지함을 공고
합니다.

1975. 4. 23

서울특별시 장

◎ 서울특별시 공고제 88 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설계계획 공람 공고

1. 건설부고시 제 177 호 (62. 12. 8
)로 고시된 보광동 버스종점 - 강변

40-26 제497호

시

보

1975.4.23

3로간 도로확장 공사에 저촉되는
토지 및 건물의 도시계획 사업 실
시계획을 수립하고자 도시계획법
제25조 및 동법 제34조의 규정
에 따라 공고일부터 14일간 일
반의 공람에 공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전실행적
과에 비치하고 토지 및 건물 소
유자와 이해 관계인에게 보이기
한다.

1975. 4.

서울특별시장

공람개요

1. 사업시행위치 : 용산구 보광동
80-9호~87-10호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보광동
버스종점~강변 3로간 도로확장공사
3. 사업의 규모 : B = 15m
L = 180m
4. 사업시작자 : 75. 7. 1
~ 75. 11. 30
5. 사업 학수 및 준공 예정일 :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
별첨 토지 조서
7.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
수용법 제4조 3항의 관계인 주
소 성명 : 별첨 토지 조서.

토지조사

순위	소재지	분할전표시			분할후표시 (수용대장)			소유자		관계인
		지번	지목	지적	지번	지목	지적	주소	성명	
1	보광동	80-9	대	91	80-14	대	40	동광동 2가 11 성수동 1가 668-13	김갑수 김치곤	
2	"	80-6	"	300	80-15	"	8	"	"	
3	"	216-3	"	65	216-6	"	15	216-3	김학원	
4	"	81-1	"	114	81-3	"	8	104	권완복	

순위	소재지	분할 전 표시			분할 후 표시 (수용대장)			소 용 자		관례인
		지 번	지 목	지 적	지 번	지 목	지 적	주 소	성 명	
5	"	94-1	"	274	94-7	"	60	동광동 2 가 성수동 1 가 668-13	김갑수 김치근	
6	"	94-3	"	158	94-8	"	65	"	"	
7	"	93	전	54	93-2	전	25	160	이성우	
8	"	92	"	90	92-2	"	53	388	장명자	
9	"	91	"	55	91-2	"	48	"	"	
10	"	90	"	111	90-2	"	73	406	조용태	
11	"	89	"	47	89-2	"	44		박규준	
12	"	119	대	89	119-2	대	9		"	
13	"	86	전	81	86-2	전	34	121	박극간	
14	"	86-1	"	22	86-3	"	13	121	"	
15	"				86-4	"	4		"	
16	"	87-5	대	132	87-10	"	1315	129	조남중	

⑥ 서울특별시 공고제 89 호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수출품 생산지

창업체 지정 및 자금 지원 요령 출개정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수출품 생산
지정업체 지정 및 자금지원 요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한다.

1975. 4. 24.

서울특별시장

40-28 제497호

시

보 1975.4.23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수출품 생산
지정업체 지정 및 자금지원 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첨부서류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영업감찰 1부

2. 협동조합 가입 확인서 1부

3. 수출실적 확인 서류 (가,

나, 다중 하나만 선택)

가. 외국환 은행 발행 수출대금
입금 증명서 1부

나. 세관 발행 수출완료증명서 1부

다. 세무서 발행 수출업체에 대

한 영업세 면세증명서 1부

4. 수출 계획 확인 서류(가,

나중 하나만 선택)

가. 수출신용장 1부

나. 수출 계약서 및 주문서(해외
공판장 확인문) 1부

5. 기타 수출실적 및 수출 계획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부 칙

1. 이 요령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 한다.

◎ 서울특별시 공고 제 92 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실시계획공람 공고

1. 건설부 고시 제 177 호 (62
12. 8.)로 고시된 산천 아파트
진입로 확장 공사에 저촉되는
토지 및 건물의 도시계획 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고자 도시계획
법 제 25 조 및 동법 제 34 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부터 14 일간
일반의 공람에 공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건설해
정과에 비치하고 토지 및 건물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에게 보이
게 한다.

1975. 4.

서울특별시장

<공람개요>

1. 사업 시행 위치 : 용산구 신창동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산천아
파트 진입로 확장공사

3. 사업의 규모 : B = 6 m
L = 519 m

4. 사업 시행자 : 용산구청장

5. 사업 착수 및 준공 예정일 :
75. 8. 1 - 75. 12. 30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
별첨 토지 조서

7.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 수용법 제 4 조 3 항의 관
계인 주소 성명: 별첨 토지 조서.

제 497 호

시 보

1975.4.23 40-29

토 지 조 서

순위	소재지	분할전 표시			분할후 표시			소유자	
		지번	지목	지적	지번	지목	지적	주소	성명
1	신창동	55	대	28	55-2	대	1.1	55	조명관
2	"	52	"	55	52-2	"	13.3	52	안일규
3	"	51	"	28	51-2	"	9.3	51	이복성
4	"	50-1	"	22	50-4	"	8.7	50-3	김수남
5	"	56-13	"	63.7	56-45	"	2.4	56	김용우
6	"	56-14	"	65.7	56-46	"	2.5	밀양동2가 274	서장예
7	"	56-15	"	51.7	56-47	"	2.0	56-5	마옥남
8	"	56-16	"	63.7	56-48	"	1.0	56-16	허필만
9	"	56-28	"	17.7	56-49	"	1.2	56-28	직율혁
10	"	56-29	"	17.6	56-50	"	3.7	56-29	월동필
11	"	86	"	44	86-2	"	13.4	86	임부웅
12	"	88-1	"	14	88-4	"	2.2	88-1	이경순
13	"	88-2	"	25	88-5	"	4.4	88-2	라일호
14	"	88-3	"	14	88-6	"	2.5	88-2	한영구
15	"	90-2	"	29	90-3	"	27.1	90-2	김만석
16	"	96	"	41	96-2	"	30.6	96	오석인
17	"	98	"	41	98-3	"	26.7	98	최완봉
18	원효로4가	1-1	"	5992	1-8	"	15.3	1	한교법 성심학원
19	"	"	"	"	1-7	"	13.3	1	"
20	신창동	106-87	"	15.2	106-87	"	11.0		국
21	"	6-39	"	90.3	6-47	"	44.5	홍제동 179-10	김진숙
22	"	6-19	"	79.4	6-49	"	1.3	산 8-1	김중례
23	"	6-18	"	40.1	6-50	"	0.3	6-18	김장환

40-30 제 497 호 시 보 1975.4.23

순위	소재지	분할전표시			분할후표시			소유자	
		지번	지목	지적	지번	지목	지목	주소	성명
24	"	6-12	"	4.3	6-51	"	0.3	효자동 172-1	김용주
25	신창동	6-10	"	34.1	6-52	"	16-1	"	김용주
26	"	6-11	"	2.6	6-11	"	1.8	"	"
27	"	6-9	"	3.7	6-54	"	0.7	6-14	박준영
28	"	6-24	"	54.1	6-55	"	11.6	"	국
29	"	49-1	전	34.1	49-11	전	9.6	"	"
30	"	6-6	대	15.2	6-56	대	5.4	"	"
31	"	6-3	"	25.5	6-57	"	11.5	"	"
32	"	6-1	"	121	6-58	"	12.5	"	이진우
33	"	7-1	"	18	7-4	"	7.7	"	7-1 유흥구
34	"	17	"	15	17-2	"	0.9	17	강익전
35	"	18	"	20	18-2	"	1.7	18	박정길
36	"	19	"	33	19-2	"	0.2	19	최병덕
37	"	21-1	"	48	21-3	"	20.3	신길동 186	김창배
38	신창동	21-2	"	21	21-4	"	19.2	66	최주성
39	"	22	"	30	22-2	"	5.5	상주군화서면표림동 155	이성탁
40	"	23	"	25	23-2	"	7.6	23	김용득
41	"	24-1	"	17.3	24-3	"	8.4	24-1	이성녀
42	"	24-2	"	35.7	24-4	"	6.1	24	문유산
43	"	25-2	"	42.4	25-5	"	6.2	이태원동 36-31	조용완
44	"	28	"	24	28-2	"	11.3	28	김동열
45	"	29	"	16	29-2	"	3.5	29	안석벌
46	"	30	"	37	30-2	"	4.7	후암동 155-19	이무서
47	"	33	"	27	33-2	"	1.1	34-2	강해진

제 497 호

시 보

1975. 4. 23

40-31

순위	소재지	분할 전 표시			분할 후 표시			소유자	
		지번	지목	지적	지번	지목	지적	주 소	성명
48	신창동	35	대	20	35-3	대	13.4	35-2	정재우
49	"	38	"	54	38-2	"	2.3	38	이소암
50	"	39	"	46	39-2	"	7.5	39	"
51	"	40	"	64	40-2	"	1.1	38	조갑윤
52	"	41-1	"	1.3	41-3	"	0.4	"	이소암
53	"	41-2	"	8.7	41-4	"	2.1	42-2	김익열
54	"	75-1	"	10	75-3	"	1.3	75-1	김병준
55	"	75-2	"	28	75-4	"	0.2	75-2	김봉선
56	"	76	"	47	76-2	"	0.1	76	최수명
57	"	74	"	34	74-2	"	6.8	74	조윤구
58	"	73-3	"	17	73-4	"	12	화성군비봉면삼화리 99	홍성세
59	"	72	"	35	72-2	"	7.8	72	이준북
60	"	71-1	"	34.4	71-4	"	3.5	71-1	방효일
61	"	71-3	"	10.3	71-5	"	1.9	71-21	이장대
62	"	77-4	"	62	77-5	"	0.2	77	신영식
63	"	78	"	28	73-2	"	2.7	78	이준설
64	"	79	"	24	79-2	"	3.3	9	할선명
65	"	88-1	"	99	88-2	"	7.4	87-1	라경관
66	"	98-2	"	27	98-3	"	1.6	98-2	윤남용
67	"	93-3	"	31.1	93-4	"	1.0	38	이소강
68	"	96.	"	28	96-2	"	8.3	96	신복무
69	"	95	"	67	95-2	"	2	100	양충선
70	"	178-1	"	51	178-7	"	11	도화동 4-47	김학주
71	"	178-2	"	21.6	178-8	"	20.7	178-2	윤성용
72	"	178-6	"	4.7	178-9	"	4.2	173-3	윤광용

40-32		제 497 호		시 보			1975.4.23		
순위	소재지	분할전표시			분할후표시			소유자	
		지번	지목	지적	지번	지목	지적	주	소 성명
73	신창동	178-4	대	4.8	178-10	대	4.3	178 - 2	유 성 용
74	"	178-5	"	15.9	178-11	"	12.7	178 - 2	김 대 영
75	"	186-1	"	45.9	186-3	"	0.2	187	유 충 언
76	"	"	"	"	186-4	"	0.4	"	"
77	"	187	"	44	187-2	"	2.8	"	"
78	"	181	"	32	181-2	"	12.5	181	이 장 레
79	"	182-2	"	42.7	182-3	"	23.1	183 - 2	장 경 호
80	"	167	"	22	167-2	"	11.5	167	이 호 범
81	"	167	"	"	168-3	"	1.6	"	"
82	"	183-2	"	22	183-3	"	9.5	183 - 2	장 인 환
83	"	184	"	68	184-2	"	11.5	원효로 4 가 154	라 경 균
84	"	185	"	55	185-2	"	6.3	185	천 충 길
85	원효로 4가	136	"	35	136-2	"	9.1		천 국
86	"	143-8	"	100	143-6	"	22.4	143 - 1	이 성 선
87	"	143-1	"	104	143-5	"	10.4	159	이 수 성
88	"	144	"	31	144-2	"	8.9	119	김 정 열
89	"	145	"	38	145-2	"	1.6	145	이 춘 배
90	"	146	"	35	146-3	"	4.7	146	최 경 식
91	신창동	54	"	29	54-2	"	0.6		송 봉 조
92	"	53	"	14	53-2	"	2		황 총 전
93	"	38	"	87.1	38-2	"	22.9		성심학원
94	"	"	"	"	38-3	"	38.9		"
95	"	56-12	"	76.8	56-44	"	6.4		김 동 길
96	산천동	산4-2	임	"	산4-6	임	23.2	효자동 172 - 1	김 용 주
97	"	6-23	대	4.8	6-23	대	4.8	원효로 2 가 17-2	수원도지함

제 497 호

시 보

1975.4.23

40-33

순위	소재지	분할전 표시			분할후 표시			소유자		성명
		지번	지목	지적	지번	지목	지적	주	소	
98	산천동	47-20	도	7.7	47-20	도	7.7			표전홍의 1인
99	"	47-21	"	0.6	47-21	"	0.6			"
100	"	25-1	대	13.7	25-1	대	13.7			국
102	"	20	"	2.7	20	"	2.7	원효로 4가	104	최봉식
103	"	42-2	"	5	42-2	"	5			국
104	"	179	"	19	179	"	19			신영남
105	원효4가	142-9	"	1.9	142-9	"	1.9			국
106	"	142-2	"	9.3	142-2	"	9.3			"
107	"	142-7	"	0.8	142-7	"	0.8			"
108	"	142-8	"	0.8	142-8	"	0.8			"
109	"	142-10	"	2.2	142-10	"	2.2			"
110	"	1-4	4-4[4]	0.8	1-4	사사지	0.8			"
111	신창동	95	대	12	95	대	12			장재상
112	"	94	"	29	94	"	29			조박
113	"	93	"	182	93	"	12			무성우
114	"	99-1	도로	12	99-1	도로	12			경국
115	"	92-1	"	2	92-1	"	2			"
116	"	91-1	"	6.9	91-1	"	6.9			"
117	"	59-2	대	32.5	59-3	대	1.0	59	- 2	조진규
118	"	59	"	23	58-2	"	2.2	58		임경상
119	"	57	"	53	57-2	"	2.2	57		박구음리
120	"	31-4	"	14.4	31-16	"	8.3	31	- 11	이병례
121	"	31-2	"	76.3	31-15	"	11.6	31	- 2	이길준

40-34 제 497 호

시

보 1975.4.23

① 서울특별시 공고 제 93 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실시계획공람공고

1. 건설부 고시 제 177 호 (62.12.8)

로 고시된 청파동 130 번지 공사
구간에 저촉되는 토지 및 건물의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고자
도시계획법 제 25 조 및 동법제 34
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부터
14 일간 일반의 공람에 공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건설행정과
에 비치하고 토지 및 건물소유자
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5. 4.

서 울 특 별 시 장

<공람개요>

1. 사업시행위치 : 청파동 130 번지부근

2. 사업의 종류및명칭 : 청파동 130
번지부근 도로확장공사3. 사업의 규모 : B = 20 M
L = 320 M

4. 사업시행자 : 용산구청장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75.7.1 ~ 75.12.306. 사용 또는 수용한 토지 : 별첨토
지도서7.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
지수용법 제 4 조 3 항의 관계인 주
소·성명 : 별첨토지조사·끝

토 지 조 서

순위	소재지	분할전표시			분할후표시			소유자	
		지번	지목	지적	지번	지목	지적	주소	성명
1	청파1가	195-2	대	15.6				청파동2가 195, 신당동231-7	강영춘 조강국
2	"	195-3	"	7.3				홍은동 11-819	강신호
3	"	196-2	"	15.3				청파동 2가 25	이광호
4	"	197-3	"	26				동자동 43-100	김동환
5	"	197-4	"	19				효창동 산 1, 홍은동 11-819	김법수 강신호

제 497 호

시 보

1975.4.23 40-35

순위	소재지	분할전표시			분할후표시			소유자	
		지번	지목	지적	지번	지목	지적	주	소
6	청파1가	198-2	대	18.2				효창동산1, 연희동192-7	김법수
7	"	199-2	"	24				노진일	
8	청파2가	115-2	"	40.4				효창동산1, 흥은동11-819	김법수
9	"	116-2	"	33.7				강신호	
10	"	117-4	"	15.2				효창동산1, 흥은동11-819	김법수
11	"	117-7	"	13.8				강신호	강신호
12	"	117-8	"	12.7				청파동2가 117-2	김병기
13	"	117-8	"	15				청파동2가 117-6	장연규
14	"	118-2	"	14.8				효창동산1, 흥은동11-819	김법수
15	"	118-5	"	31.1				"	"
16	"	121-2	"	19.5				"	"
17	"	121-7	"	3.5				잘월동 14-1	김귀환
18	"	118-3	"	10				흥은동 11-819	강신호
19	"	121-8	"	7.4				태평로2가 72, 1~1	유복한
20	"	121-3	"	16.6				태평로2가 72	유삼재
21	"	120-6	"	3.3				청파동2가 121	천예한
22	"	120-4	"	10				율지로2가 36-1	중소기은
23	"	121-4	"	19.5				"	"
24	"	121-9	"	10.5				청파동2가 125	삼성제빙Co
25	"	120-5	"	4				율지로2가 121	중소기은
26	"	121-10	"	12.9				청파동2가 125	삼성제빙Co
27	"	121-11	"	11.3				125	"
28	"	121-6	"	31.7				율지로2가 36-1	중소기은
29	"	124-1	"	45.3				121	삼성제빙Co
30	"	124-2	"	34.1				"	"

40-36 제497호

시 보

1975.4.23

순위	소재지	분할전표시			분할후표시			소유자	
		지번	지목	지적	지번	지목	지적	주소	성명
31	청파2가	124-2	대	29.5				121	삼성제비Co.
32	"	125-1	"	25.2				"	"
33	"	125-2	"	26.8				"	"
34	"	128-1	"	6.2			신도면진판리 388-105	김영주	
35	"	128-2	"	2			율지로2가 36-1	중소기은	
36	"	128-3	"	19.3			진판내리 388-105	김영주	
37	"	129-2	"	57.8			청파동2가 192-2	이필종	
38	"	129-6	"	21.8			"	"	
39	"	129-4	"	16.1			효창동 117	남상순	
40	"	129-5	"	12			청파동2가 129-2	양선경	
41	"	130-1	"	13.9			효창동11, 흥은동11-819	장세수호	
42	"	130-2	"	60.3			청파동3가 21-4	이춘화	
43	"	130-3	"	15			"	"	
44	"	130-4	"	25.1			청파동2가 130-11	양선경	
45	"	130-5	"	25.7			청파동3가 21-4	이춘화	
46	"	131	"	20.7			서계동 33-56	김윤권	
47	"	131-1	"	20			"	"	
48	"	131-2	"	6.3			"	"	
49	"	132	"	22.8			청파동2가 132	어수영	
50	"	132-1	"	16			흥은동 11-819	장신호	
51	청파3가	1	"	7			청파동3가	함석현	
52	"	1-1	"	5.9			"	"	

제 497 호 시 보 1975.4.23 40-37

순위	소재지	분할전표시			분할후표시			소유자	
		지번	지목	지적	지번	지목	지적	주소	성명
53	청파3가	2	대	22				청파동 2가 2	김명근
54	"	2-1	"	16				"	"
55	"	2-2 3-2	"	31-8				청파동 3가 2	이민홍
56	"	121-5	"	22-8					삼성제방Co.
57	청파1가	195-1	하천	2-4					경성부
58	청파2가	117-2	"	1-8					국
59	"	117-3	"	3-3					"
60	"	117-5	"	1-3					"
61	"	117-9	"	1-4					"
62	"	118-4	"	1-1					"
63	"	120-3	"	3					"
64	"	126-3	"	4					"
65	"	129-3	"	12-2					"

사령

◎ 1975.4.21

용산구보건소 지방보건 기사보 최정상
 지방공무원법 제 69 조제 1항
 제 1, 2 호에 의거 전체에 처함.
 영등포구 보건소 지방보건 기사보 강두길
 지방공무원법 제 69 조제 1항
 제 1, 2 호에 의거 전체에 처함.

영등포구 보건소 지방보건 기사보 주치호
 지방공무원법 제 69 조제 1항
 제 1, 2 호에 의거 전체에 처함.
 마포구보건소 지방보건 기사보 민경창
 지방공무원법 제 69 조제 1항
 제 1, 2 호에 의거 감봉 1월에 처함.
 의약과 보건소 지방약무 기사보 임경수
 지방공무원법 제 69 조제 1항
 제 1, 2 호에 의거 감봉 1월에 처함.

40-38	제 497 호	시 보	1975.4.23
마포구보건소	지방보건 기 원	김 남 현	성 복 구 지방행정 주 사 보 박 유 훈
지방공무원법 제 69 조제 1 항			지방공무원법 제 69 조제 1 항
제 1,2 호에 의거 감봉 1 월에			제 1,2 호규정에 의거 견책에
처함.			처함.
영등포병원	지방보건 기 원 보	서 길 석	도 봉 구 지방행정 주 사 보 이희석
지방공무원법 제 69 조제 1 항			지방공무원법 제 69 조제 1 항
제 1,2 호에 의거 감봉 1 월에			제 1,2 호규정에 의거 견책에
처함.			처함.
서대문구	지방수의원	김 형 청	은평출장소 지방행정 서 기 보 이현규
보 건 소			지방공무원법 제 69 조제 1 항
지방공무원법 제 69 조제 1 항			제 1,2 호규정에 의거 견책에
제 1,2 호에 의거 견책에 처함.			처함.
연로시험소	지방행정 서 기 보	곽 재 근	관 악 구 지방행정 주 사 보 박원모
지방공무원법 제 69 조제 1 항			지방공무원법 제 69 조제 1 항
제 1,2 호규정에 의거 감봉 1 월			제 1,2 호규정에 의거 감봉
에 처함.			1 월에 처함.
중 구	지방행정 서 기	박 재 석	관 악 구 지방행정 주 사 보 이소형
지방공무원법 제 69 조제 1 항			지방공무원법 제 69 조제 1 항
제 1,2 호 규정에 의거 견책			제 1,2 호규정에 의거 견책에
에 처함.			처함.
성 동 구	지방행정 서 기	김 재 멱	성동구근무를 명함.
지방공무원법 제 69 조제 1 항			용산구보건소 지방행정 사 무 편 이민수
제 1,2 호 규정에 의거 감봉			지방공무원법 제 69 조제 1 항
3 월에 처함			제 1,2 호규정에 의거 감봉 1 월에 처함

지하철본부 주 지방행정 사 신영우 에 산급당관실 근무를 명함.	양정과 지방행정 김주현 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
마포구보건소 지방보건 법역과장 연 구판 김학영 지방공무원법 제 65 조의 2 제 1항 1호 및 4호의 규 정에 의하여 그 직위를 해제함.	수도국 서기관 한재 영등포구청장 직무대리를 명함.
◎ 1975. 4. 22	세정과 서기관 노진일 수도국 수도행정당관 직무 대리를 명함.
시장실 지방비서관 (3강상당) 김만두 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	도시가스 지방화공기 사업소 사보 시보 윤완섭 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
◎ 1975. 4. 23	주택건설 지방건축 사업소 기사보 박남준 사민회관 근무를 명함.
운수 2과 주 지방행정 조영한 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 아동과 주 지방행정 현우성 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	종로구청장 부이사관 도지문 서울특별시 재무국장에 보함. 영등포구청장 부이사관 김진원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에 보함.
◎ 1975. 4. 24	녹지국 조경과장 진원섭 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
구획정리 1과 지방토목 원 진석우 부직을 명함. 5호봉을 급함. 구획정리 1과 근무를 명함.	재무국장 이사관 한중설 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
◎ 1975. 4. 25	◎ 1975. 5. 1
법무담당관실 지방행정 주사보시보 장광진 지방행정주사보에 임함. 1호봉을 급함. 법무담당관실 근무를 명함.	경북안동군 서기보 김옥희 서울특별시 전임을 명함. 지방행정서기보에 임함. 4호봉을 급함. 종로구 근무를 명함.

1976.4.23

변순자	주경숙
지방간호기원보시보에 임함. 1호봉을 급함.	지방간호기원보시보에 임함. 1호봉을 급함.
종로구보건소 근무를 명함.	영등포구보건소근무를 명함
박윤자	강국자
지방간호기원보시보에 임함. 1호봉을 급함.	지방간호기원보시보에 임함. 1호봉을 급함.
용산구보건소 근무를 명함.	서대문구보건소근무를 명함.
강영자	조택현
지방간호기원보시보에 임함. 1호봉을 급함.	지방약무기원보시보에 임함. 1호봉을 급함.
동대문구보건소근무를 명함.	마포구보건소 근무를 명함.

서 울 특 별 시 장